

인권센터 카드뉴스 10호

가정폭력 ②

가정폭력

좀 더 알아볼까요?



우송대학교 인권센터

복습하기

가정폭력 이란?

"가정폭력"

가족 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력.
가정폭력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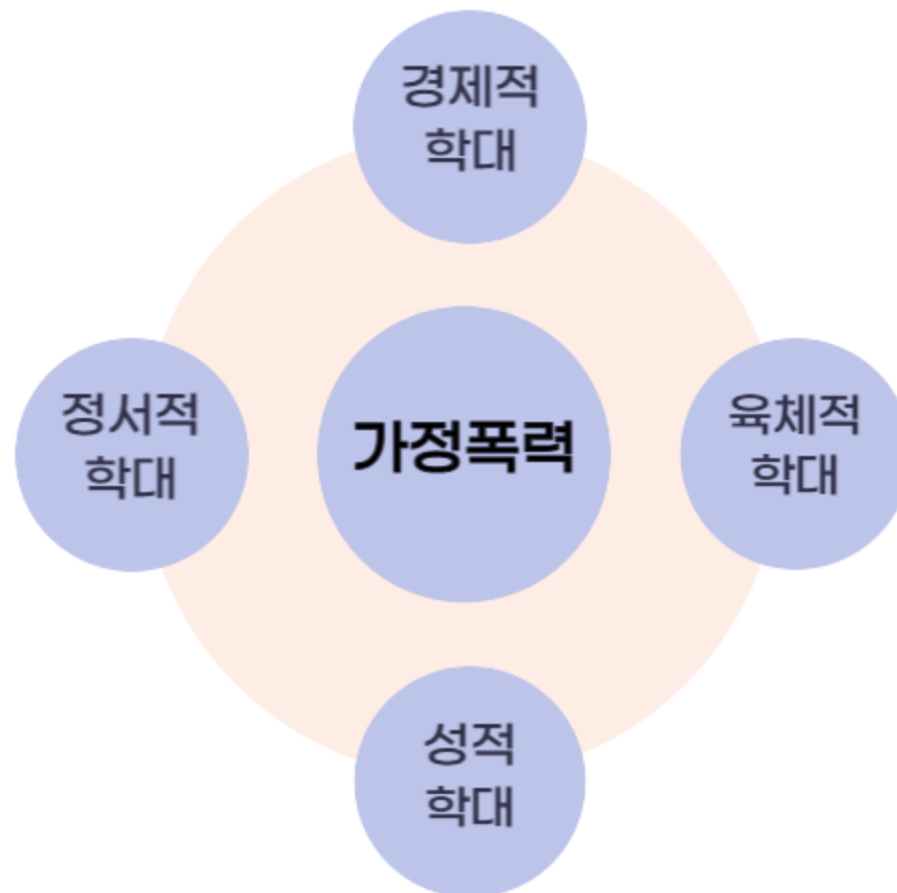
어른들이 아이에게 하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하는 가정폭력, **노인학대**

가족 중 힘이 약한 아이나 노인에게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에는
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복습하기

가정폭력 이란?

- ▶ 직업을 못가지게 하거나, 금전적인 갈취, 폭언, 고립 시키기, 방임, 협박, 강제적 성관계 등
경제적 · 정서적 · 육체적 · 성적 학대





가정폭력, 궁금해요!

Q.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폭행한 경우에도 가정폭력에 해당되나요?

A. 네, 사실혼 관계도 가정폭력 당사자로서의 "가정구성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2호





가정폭력, 궁금해요!

Q. 가정폭력을 사유로 직계존속이나 형제 상대로 접근금지 및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으나, **가정폭력의 경우 예외적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접근금지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223조 및 제224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1항 및 제2항



가정폭력, 궁금해요!

Q. 가정폭력은 그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집안일 아닌가요? 피해자도 가만히 있는데, 제 3자인 제가 신고하는건 오지랴 아닐까요?

A.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다른 가정의 사생활이 아닌,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 보호 규칙에 따라 신고에대한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및 제4항

가정폭력 ○×퀴즈

질문

- | | | |
|--|---|---|
| ① 우리 집에서 폭력이 매일 일어난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 ○ | X |
| ② 폭력을 당하더라도 우리 집의 행복을 위해 감춰야 한다. | ○ | X |
| ③ 심한 말을 했어도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으면 가정폭력이 아니다. | ○ | X |
| ④ 가정폭력은 어른들에게만 일어난다. | ○ | X |
| ⑤ 말이 안 통하거나 화가 나면 폭력을 좀 써도 된다. | ○ | X |
| ⑥ 술을 마시고 때렸다면, 술 때문이니까 용서할 수 있다. | ○ | X |
| ⑦ 누군가 맞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 ○ | X |
| ⑧ 부모님이 아이를 때리는 것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니까 참아야 한다. | ○ | X |

정답 확인

질문

- ① ○ 경찰이 어렵다면 1366(여성긴급전화)으로 상담해도 좋습니다.
- ② X 폭력을 당했다면 감추지 말고 바로 알려야 합니다.
- ③ X 가정폭력에는 물리적 폭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욕설이나 협박, 고립 등 정신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 ④ X 가정폭력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⑤ X 어떤 사유로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 ⑥ X 술로 인한 우발적인 폭력도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 ⑦ ○ 남의 일이라고 방관해선 안됩니다.
- ⑧ X 훈육과 폭력은 다릅니다. 아동학대는 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관련 상담기관

기관	전화	홈페이지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www.women1366.kr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국번없이 117	www.safe182.go.kr
한국남성의전화	02-2653-1366	www.manhotline.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www.lawhome.or.kr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www.familynet.or.kr
다누리콜센터	1577-1366	www.liveinkorea.kr



우송대학교 인권센터